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1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 민형배·이상식·박홍근

이성윤 • 이수진 • 이기헌

전용기 · 김현정 · 김문수

김동아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 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안 제32조 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
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	え) ①
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	
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	
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
	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
	회를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